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 제1차 정기회의 약식 회의록

작성 : 경기환경운동연합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08. 8. 1(금), 10:00 ~ 12:00
- 장소 : 정부과천청사 2동 소회의실(111호)

### □ 참석

- 중앙정부    환경부 : 정종선 토양지하수과장 (협의체 위원장)  
                  강석우 토양지하수과 서기관 (물환경관리 총괄)  
                  전권호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관련법 총괄)  
                  맹학균 토양지하수과 서기관 (협의체 간사)
- 국방부 : 이균    환경보전과 주무관
- 광역지자체    강원도 : 조규석 환경정책과장  
                  이용환 환경정책과 주무관
- 경기도 : 제2청 정영균 특별대책지역과 주무관
- 시민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 : 김유 사무차장  
                  녹색연합           : 서재철 녹색사회국장

<붙임>

## 반환 미군기지 정화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안건

기관명	출천시
안건명	공여·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오염정화 주체의 변경
<p>□ 현행규정 제28조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건의(안) 제28조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오염·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 제안이유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국방에 기여한다는 의무감으로 인내해 왔으나 미군주둔시 도시개발의 제한요소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실정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여구역 소재의 자치단체에 <u>환경기초조사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 의무까지 부여</u>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함.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록, 국방부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는 아닐지라도 국방상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포괄적으로 관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보아 <u>환경기초조사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한 의무도</u> 가져야 한다는 의견임.</p>	

**결정 :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 협의체에서 진행하지 않음.**

**의견 :**

국방부 : 개정 필요치 않음.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 오염원인자가 공여구역인지 확실치 않으므로 지자체가 조사한 뒤, 오염원인이 기지 내에 발생하였다면 국방부가 오염 치유의 책임이 있음  
강원도&경기도 : 개정 필요. 경기도 공여구역의 주변지역 조사 예산이 약 20억 소요. 예산 확보의 어려움.  
환경부 : 행자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 협의가 필요

기 관 명	강 원 도
안 건 명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협조
<p>2011년 반환 예정인 원주 캠프롱에서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기름이 유출되었으나, 미군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p> <p>□ 2008. 3. 12 기름유출 사고현황 및 미군측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시는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 접수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채취, 토양오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li> <li>- SOFA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상황보고 후, 한·미공동실무그룹 구성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결과 : 2,000 ~ 24,000ppm(우려기준 500ppm, 대책기준 1,200ppm)</li> </ul> </li> </ul> </li> <li>○ 미군측에서는 보일러 배관파열로 약 400ℓ의 유류가 유출되었으나, 방제작업을 실시해 추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공동실무그룹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3.26 개최하기로 한 그룹회의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함</li> </ul> </li> </ul> <p>□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미군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들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측에 공동조사 및 복원 등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등이 배제된 SOFA규정의 개정을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FA 규정에는 환경사고가 발생해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공동조사와 오염제거 및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복원비용 납부에 대한 강제규정 등이 미비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미군기지의 유사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미군측과 SOFA 규정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li> </ul> </li> </ul> </li> </ul> <p>※ 캠프롱은 지난 2001년 약 4,000ℓ의 유류를 유출시킨 바 있으며, 당시 미군은 조사비용과 복원비용을 납부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원비용 1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주시와 소송 계류 중에 있음</p>	

결정 : 협의체 목적상 반환공여구역 환경 치유가 아니므로 다른 채널로 협의가 필요

의견 :

시민단체 : 중앙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환경부 : SOFA 논의 진행중

기 관 명	경기도
안 건 명	반환미군기지 오염토양 타기지 집약정화 처리

□ 세부내용

《현행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을 정화시 오염이 발생한 당해부지안에서 정화 원칙
- 당해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가능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제2005 - 174호 '05. 12. 21)〉

1.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어 부지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2.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5㎡ 미만)
4. 비소, PCB, 유기인화합물의 토양오염으로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5. 정화부지가 50㎡ 이내로 협소하여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건의내용》

○ 대상범위 : 시군내 소재한 반환미군기지의 오염토양으로 제한

○ 대상선정

- 시군은 활용계획 및 주변 상황을 고려, 최적의 정화시설 설치대상 기지 1~2곳의 후보지 선정
- 후보지는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행 수탁자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정화시설 설치부지 최종 결정

○ 처리방법

- 처리시설은 처리대상 기지수, 오염정도, 토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오염토양의 수송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군용시설 활용가능 등)
- 정화시설이 설치된 기지에 주변 기지의 오염토양 집약하여 정화처리 실시
- 반출대상기지는 토양오염 조사기관 등이 상주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검증절차(3단계)에 따라 완료검증
  - 토양정화사업 착공전 - 검증계획의 수립단계
  - 토양정화사업 진행중 - 과정검증단계
  - 토양정화사업 완료시 - 완료검증단계

○ 기타사항

- 정화시설 설치대상 기지의 토양오염은 타기지에서 반입되는 오염토양과 동시 처리 원칙
- 오염토양의 굴착, 운반, 정화시 우려되는 주민, 시민단체 등의 민원은 해당 시군에서 신속히 대처

- 굴착지 복토 및 사토처리 등 사후처리 검토 필요

《기대효과》

- 미군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조기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
-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정화공법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 신속하고 완벽한 정화를 통한 주민, NGO 등의 신뢰도 증진
- 오염도양의 신속한 정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오염 확산 예방

□ 제안이유

-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해 반환기지 환경 오염의 신속하고 완벽한 정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시·군의 개발계획에 차질없도록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행 필요
-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사항 외에는 오염도양의 외부반출은 불가하나 동일 사업장의 범위와 이동방법에 대해선 제한규정 없음
  - 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는 대규모 오염지역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특수 사항으로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방법의 적용 필요
- ※ 외부반출은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으로 반출을 의미하나 도 요구사항은 타기지로 이동·집약하여 정화처리하려고 하는 것임
- ⇒ 따라서 유관기관 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집약처리 처리근거를 마련 하고 고시개정 등을 통한 관련기관 부담감 해소 추진

**결정 : 오염도양의 반출 정화에 대해 전문적인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여 논의**

**의견 :**

환경부 : 오염도양의 반출 정화를 진행할 시 여타 정화업체들과 행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중이므로 유보 입장. 경기도와 국방부의 협력이 필요

국방부 : 환경정화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되므로 유보

녹색연합 : 반출 정화시 기타 오염 발생이 필연적이고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가 결여되었으므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

기 관 명	경기도
안 건 명	반환기지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일괄 정화처리

□ 세부내용

《현행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규정없음
  - 특별법상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근거만 마련됨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 토양오염 발생시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

《건의내용》

- 환경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주변지역중 오염우려지역은 국방부장관이 오염조사 실시하고 오염원인이 반환기지인 경우 반환기지와 동시에 오염정화실시
  - 국방부장관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기 조사된 환경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반환기지 경계지역중 오염우려지역은 국방부장관이 오염여부 조사
  - 주변지역의 오염원인이 반환기지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오염정화 실시
  -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오염정화는 완벽한 정화를 위해 반환기지와 동시에 오염정화 추진

《기대효과》

- 주변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화로 주민피해 예방
- 반환기지로 인한 오염확산의 방지 및 정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제안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반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규정하고 있으나 정화주체에는 미규정되어 혼란예상
  - ⇒ 따라서 정화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국방부와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오염의 신속한 정화실시로 주민들의 피해 예방 필요

**결정 : 1차조사로 원인자가 공여구역 기지로 밝혀지면 국방부 정화하도록 함**

**취지 : 반환기지 내 환경 치유와 주변지역 환경 치유가 2중으로 진행될 소지가 높으므로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치유 시 주변지역을 묶어 진행하도록 함**

**의견 :**

국방부 : 공여구역주변지역 1차조사로 원인자가 기지로 밝혀지면 정화

경기도 : 주변지역에 대한 신속한 환경조사가 필요

기 관 명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안 건 명	반환기지 환경치유 계획안과 실시설계 현황 보고 요청 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

※ 경기환경연합과 녹색연합의 안건이 유사하여 묶어 처리함

□ 세부내용 (경기환경운동연합)

중앙기관의 환경치유 계획안과 현재까지 추진된 실시설계 현황에 대한 문서화된 보고가 필요

□ 세부내용 (녹색연합)

- 협의체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 마련
  - 비공개 홈페이지나 개인 메일로 진행 사항 공유 필요
- 일반 대중들에게 정화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
  - 국방부의 정화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
  - 환경부의 국방부 관리, 점검 상황 정보 공개 필요
- 이번 회의시 공유 필요 건
  - 국방부 정화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한 일정
- 지속적인 협의체 틀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결정 :** 국방부는 다음 2차정기회의에 정화사업 실시설계 등 현황 보고를 하도록 한다  
2차정기회의의 일자 는 을지훈련 뒤로 일자를 확정하고  
각 기관은 8월11일까지 안건을 환경부로 전송하기로 함

※ 그러므로 지역조직은 다루기를 희망하는 요청 내용을 8월10일까지(늦어도 11일 오전까지) 경기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의견 :**

환경단체 : 정보 공유도 없이 협의체 운영은 곤란.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협의와 합의가 필요함

환경부 : 국방부의 정보 공유가 필요

국방부 : 다음 회의에 보고하겠음

기 관 명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안 건 명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있어 유관기관협의체 역할 규정 지역협의체 구성 제안에 관한 건

※ 경기환경연합과 녹색연합의 안건이 유사하여 묶어 처리함

세부내용 (경기환경운동연합)

유관기관협의체는 반환기지 환경치유의 1차 역할기구로서 위상 확립이 필요

세부내용 (녹색연합)

- 민·관·군 지역 협의체 구성 추진 방안
- 지역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의 틀 논의
- 차선으로는 지역별로 환경 감시단 구성을 논의

제안 이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앞으로 반환된(혹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있어 유관기관협의체 역할 규정 필요

제안 이유 (녹색연합)

중앙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축소로 인해 보다 정밀하고 투명한 환경 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결정 :**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는, 다음 2차정기회의에 경기도의 지역협의체 구성안을 보고 받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내용 :**

경기도는 지역협의체를 ①행정기관과 정화 수탁기관 중심의 행정협의체, ②지역주민, 단체, 행정기관으로 구성하는 지역협의체로 나눠 구성을 추진.

**의견 :**

경기도 뺀 모든 기관 : 행정, 정화기관, 지역주민과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